

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(제14조제1항 관련)

구분	등록기준
인력기준	다음 각 호의 인력기준을 모두 갖추 것 1. 직무분야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급 이상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각각 1명 이상 갖추 것 가. 기계분야 나. 전기·전자분야 2.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인이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
보유장비	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추 것 1. 길이, 각, 압력 성능시험장비 2. 전류, 전압, 저항 측정장비 3. 데이터처리 프로그램 4. 데이터 측정장비